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5355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可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주식회사 D

5. E

변론 종결 2016. 3. 23.

판결 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41,175,817원 및 그 중 939,240,365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8.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466,935,452원및 그 중

46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12%의,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 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14. 4. 18.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에게 특허청 2014. 4. 21. 접수 F로 마친 특허권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4. 4. 18.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는 피고 B에게 특허청 2014. 4. 21. 접수 G로 마친 특허권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941,175,817원 및 그 중 939,240,365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66,935,452원 및 그 중 46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②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 번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11. 2. 28.	300,000,000원	2012. 2. 28. (2015. 2. 27.로 연장)	국민은행	2011. 2. 28.	300,000,000원
2	2012. 5. 11.	630,000,000원	2013. 5. 10. (2014. 5. 9.로 연장)	국민은행	2012. 5. 16.	700,000,000원

2)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보증책임 이행금액 기준 1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신용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보증책임 이행금액 기준 31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책임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피고 A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위1)항 표 기재와 같은 대출을 받았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②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는 2014. 4. 3. 대출이자 지급의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 국민은행은 2014. 6. 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8. 7. 국민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97,353,042원과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641,887,32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 3)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 이후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1,615,200원을 지출한 뒤 그 중 31,848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352,100원이다.

다. 특허권의 양도

- 1) 피고 B는 2014. 4. 18.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1.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특허권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 2) 피고 B는 2014. 4. 18.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1. 주문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특허권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을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하고, 위 각양도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의 대출이자 지급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941,175,817원(= 대위변제금939,240,365원 + 법적절차비용 1,583,352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 보증료 352,1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39,240,36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66,935,452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관련 연대보증 원금 150,000,000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관련 연대보증 원금 315,000,000원 + 법적절차비용 1,583,352원 + 이 사건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 352,1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65,0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일부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일인 2014. 4. 21.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 피고 A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 4. 3. 무렵인 2014. 4. 18.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한편, 피고 D는 2014년 2월 초경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특허에 관하여, 피고 E은 2014. 3. 15.경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특허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당시 합계 15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특허권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국민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465,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따라서, 피고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2. 4. 18.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 D 또는 피고 E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3)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B의 채무의 액수,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양도된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D, E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 D, E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 D, E은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수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양도계약 당시 피고 B의 구체적인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E이 2015년 2월경 및 4월경 4건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2,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 D는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특허권을, 피고 E은 별지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특허권을 양수한 후 실제로 이를 활용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이 위와 같이 출원한 4건의 특허는 별지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특허권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 E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 B과 피고 D, E 사이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5 내지 제10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권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이상훈, 판사 이현경